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7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본인 및 직계비속의 혼인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신영대의원안)	3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0.
- (3) 회 부 일 : 2025. 3.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함. 통계청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수치임.

최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결혼 5년 차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4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에서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이 대폭 인상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뜻하는 일명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22.5% 급증함.

혼인율 제고로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결혼 비용이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하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본인 및 직계비속의 혼인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신영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특별소득공제(제52조)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신 설>	☐ <u>특별소득공제에 혼인소득공제 추가</u> ○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자 - 공제기간: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공제금액: 500만원 ○ 시행일: 2026.1.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영대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72)

☐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4년 기준 22만 2,412건을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7년 5.2건에서 2024년 4.4건으로 약 16%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혼인건수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222,412
조혼인율	5.2	5.0	4.7	4.2	3.8	3.7	3.8	4.4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 KOSIS)

이와 같은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출생아수는 23만 8,000명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저출생 추세가 일부 반등하였으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아 수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합계출산율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자료: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 KOSIS)

□ 이에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혼인과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지표누리)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별소득공제의 신설을 통한 혼인을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 결혼정보 전문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3억 6,173만원으로 2024년 대비 6,425만원 증가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정안에 따른 1인 기준 공제액의 인상분은 약 76만원으로, 평균 결혼비용의 0.21%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혼인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1) 2025년 결혼비용 보고서, 2024년 결혼비용 보고서 등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혼인이 출생의 전단계로 인식되기는 하나, 혼인과 출산을 독립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30.5	32.0	34.7
청년	46.4	50.5	53.5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국가데이터처, 2023. 8. 28.

또한, 청년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²⁾, 고용·소득 불안정과 아울러 올로족, 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관련 공제 금액의 인상 및 적용기한의 연장으로는 최근의 비혼·저출생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청년(15세~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6.7% → 2018년 47.1% → 2019년 47.8% → 2020년 46.4% → 2021년 47.9% → 2022년 49.8% → 2023년 49.4%로 나타나고 있음.(국가데이터처,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중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비용	46.4	65.8	53.2	51.4	41.9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12.5	9.1	8.6	13.9	12.6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8.8	9.2	16.4	12.9	25.2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3.7	9.1	11.8	12.3	18.2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7.5	6.3	8.5	9.5	1.2
기타	1.1	0.6	1.5	-	0.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p.59

셋째, 혼인소득공제의 경우 기(既)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폐지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4년³⁾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가 시행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특별공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음.

또한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혼인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도 ‘혼인’ 자체에 대한 일회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는 운영 중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공제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혼인관련 세액공제가 202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동 제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생애 1회에 한해 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게 됨. 그런데 동일한 혼인에 대해

3) 「소득세법」 [제88차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5호]

제52조(특별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혼인한 자 본인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 부모에게는 5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미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 추가도입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혼인소득공제를 도입할 경우 및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825억원(연평균 △965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6년~2030년, 귀속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누적	연평균
개정안	△965	△965	△965	△965	△65	△3,860	△9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